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31949 판결 [연대보증금지급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나337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31949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 선고 2014.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1,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0. 주채무자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 당시 피고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채무자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가소3870호)을 제기하여, 2004. 6.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0.부터 2003. 8. 29.까지는 연 36%의, 200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4. 6.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무는 2014. 5. 26. 기준 원금 15,000,000원과 연체이자 43,771,637원 합계 58,771,63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58,771,637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전소인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가소3870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판결이 추완항소 또는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효선